

혼인후의 처(妻)의

본적지

신분등록관 [서명]

보고처 칸톤 감독관청 (2) -/-

가족등록부

에 대한 등록 -/- 권수(卷數)-/- 불랏트(揭示物) -/-

(그림 3) 스위스 혼인공고(공고문서)

약혼자 쌍방은 이하의 신고를 하였다.

가족명. 이름 신분(身分).본적지

출생지와 날짜. 주소 및

가족명. 이름. 신분

본적지

출생지와 날짜

주소

본 약혼(約婚)은 본 문서로 공고되었다. 약혼자의 혼인능력 또는 법정 혼인장애를 근거로 하여(민법 96조-104조) 본 혼인체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본 공고 게시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분등록소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기와 같이 게시(揭示)되었다 [인]

날짜 ; D 신분등록관

[신분등록소가 발행하는 증명서]

이미 혼인을 한 스위스 국적의 약혼여성은 다음 시읍면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최초혼인 체결 전 시읍면

혼인에 의해 시읍면

최초혼인 체결 후 시읍면

취득원인

시민권 취득날짜

시민권취득신분

약혼자는 신분등록령 136조3항에 따라 후견심사(後見審査)로 등록을 해야 하는가.

아니오 예

본 공고문서는 당 등록소에서 법정기간 동안 공고되었다.

혼인체결에 대해서

이의신청 없음 D 신분등록관

이의신청 있음

[인장]

시읍면의 가족등록부에 의거하여

개인심사필

권수(卷數) (게시물)

날짜

(그림 4) 스위스 가족수첩
 스위스연방 1991.Mai. 15-/- Hallwil 아르가우에서 혼인이 체결되었다
 칸톤

Familienbuchlein

출생(장소와 날짜)	부,처(夫,妻)	출생(장소와 날짜)
St.Gallen 1.Juni 1960	성혼절차 후 가족명과 이름 Hinder,BerhartOskar-/-Hider,g eb.vonaesch Heide -/- 성혼절차 전의 민사신분 독신 -/- 독신-/-	
사망(장소와 날짜)	성혼절차 후의 본적지 Kanderster 베른 -/- Kandersteg 베른과 Mettau 아 르가우 父의 가족명과 이름 Hinder, Oskar Johann -/- Vonaesch, Fritz Karl -/- 母의 가족명과 이름 Hinder geb.Eiter, Simone Vonaesch geb.Alder, Margrith -/-	Horn 츠루가우 15.Mai.1964 사망(장소와 날짜)
	발행 15.mai 1991 하기에 의거하여 신분등록관 혼인등록부 [관청인] 권수(卷數) 1991 번호 89 가족등록부 블랏트(게시물) 권수(卷數) 번호	

신분, 성명, 시민권의 변경
 스위스 신분등록 협회발생 형식'92

자녀 이면(裏面) 항 참조

자녀 가족명, 이름, 본적지	출생(장소와 날짜)	신분, 이름, 시민 권의 변경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 자녀에 한함)	사망(장소와 날짜 독신 자 녀)
1 Hinder,Martin, Oskar -/- Kandersteg 시민-/-	Hallwil 아르가우 17.Januar 1992 [관청인]		
2			

(그림 5) 스위스 가족등록부

1987년12월31일후의 (게시물) 개시
 소속군 시읍면의 가족등록부 츠갓바
 라우벤베르크

뮤러	상기의 시민 출생에 의해 츠갓바[시민] 기타 상기 시민	블랏트 317	
출생날짜와 장소	부모에 대한 것과 블랏트	신분의 변경 성명, 시민권	사망날짜와 장소
아라우.아루 가우 10월9일 1961년	11/23 나의 아들 뮤러 처(妻) 물러	1989년3월2日 브라질법에 따라 물러성 (姓) 취득	
쉐렌베르토 아루가우 4월8일 1963년	성혼절차의 장소와 날짜 노바 푸리부르고(이오데자 레이로, 브라질) 1987년3월14일		
	자녀 [필자, 생략]	추가편과 블 랏트	

(그림 6) 스위스 혼인등록부 초본

1. 국명 스위스연방 2. 신분등록관청 주네브

3. 혼인등록부의 초본 Nr.1990/264/840	
4. 혼인체결 날짜와 체결지 1990년 10월 12일	
5. 부(夫)	6 처(妻)
7. 혼인 전의 성(姓)	
8. 이름	
9. 출생일과 출생지	
10. 혼인 후의 성씨	
11. 등록에 의거한 기타 표시 부부의 국적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부부의 최후 주소 부(夫)의 자(子): 란츠아의 아들 000 처(妻)의 자; 의 딸 000	
12. 발행, 서명, 스탬프 날짜 1990년 10월 12일 [서명]	

IX. 오스트리아

1. 신분등록부

오스트리아의 신분등록부는 4가지 종류의 개별등록부(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인지등록부, 사망등록부)가 있으며, 가족등록부나 가족수첩제도는 1983년 전면적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근거 법률로는 1983년의 신분등록법(Personenstandsgesetz, 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총 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이 사람의 출생·혼인·사망과 그 신분의 공증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문 수는 75개로, 스위스법의 절반 이하이지만, 신분등록법 시행령에 보충되어 있다.

2. 개별등록부

가. 출생등록부

스위스와 거의 비슷하며, 子の 혼인이나 사망과 같은 사항이 추가정보로서 사후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스위스법과 다르다. (그림 1 출생등록부 참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발생지주의, 즉 출생에 대해서 출생지주의(법 제2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스위스 등의 여러 국가들과 동일하다. 출생지에 대해서 스위스는 열차 등의 하차지(下車地)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오스트리아에서는 교통기관의 출발지(出發地)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등록내용에 관하여 ① 부모의 출생일을 기재하는 점, ② 부모의 교회 내지 종교단체에 대한 귀속 여부까지 기록하는 점, ③ 사후등록으로 특히 자녀의 혼인이나 사망을 기록하는 점 등이 스위스와 다르다. 그러나 ②, ③은 독일과 공통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신고기간이 2주일이라고 하는 점은 스위

스보다 길다.

셋째, 출생등록증명서(일종의 초본) 교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제약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즉, 열람이나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의 제약, 이해관계 소명(疎明)요구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나. 혼인등록부

첫째, 성혼절차 조항은 내용에 있어서 독일, 스위스와 거의 공통적인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그림 2 참조). 혼인능력의 심사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하다(법 제42조, 제45조).

둘째, 부부의 마지막 전혼(前婚)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독일에서는 부부의 직업, 학위, 종교(이것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외에 증인에 대해서도 그 직업·연령이 명시된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종교 이외에 증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주소도 기재된다.

셋째, 스위스와 달리 혼인해소·무효선고, 종교변경 등의 사항을 사후등록(事後登錄)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족등록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대신 출생등록부나 혼인등록부에 집어넣는 정보가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다.

다. 등록부의 비공개 원칙

오스트리아법에서도 등록부는 제3자에 대하여 비공개가 원칙이고, 법 제37조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신분등록부와 이에 부속된 문서에 대한 열람 및 신분증서의 교부에 대한 권리는 ① 등재된 자 본인, ② 등재된 자 본인의 우월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법적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 ③ 법률집행의 범위 내에서 관청과 공법상의 단체만이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이해관계가 다만 일정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소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데이터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률(Datenschutzgesetz, 1999년 8월 17일 개정)

제1조 제1문에서는 “누구나 특히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존중과 관련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그와 관계된 신상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1조 제3항에는 “이 법이 전산화된 정보와 아울러 수작업으로 처리된 정보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가족등록부, 가족수첩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전에는 가족등록부와 가족수첩제도가 존재하였다. 1983년 신법에서 양제도를 모두 폐지하였다. 폐지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을 보면 제1부에서 혼인체결에 대해서, 제2부에서 부부의 부모, 부부 자신, 공통 자녀, 서자, 양자 등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림 1) 오스트리아 출생등록부

출생등록부

관청	등록번호
子	가족명 이름 성별 출생시기와 장소
父	가족명 이름 소속된 종교 주소 출생일과 장소 출생등록
母	가족명 이름 소속된 종교 주소 출생일과 장소 출생등록
	기타 기술사항 등록일자 신분등록관
비고	양친의 혼인체결(날짜와 등록) 자녀의 국적 자녀의 혼인체결(날짜, 장소, 등록) 자녀의 사망

(그림 2) 오스트리아 혼인등록부

혼인등록부

	관청(官廳)	등록번호
부(夫)	혼인체결후의 가족명	
	이름	
	혼인체결전의 가족명	
	주소	
	소속된 종교	
	출생일과 장소	
	출생 등록	
처(妻)	혼인체결후의 가족명	
	이름	
	혼인체결전의 가족명	
	주소	
	소속된 종교	
	출생일과 장소	
	출생 등록	
	혼인체결목적으로 하기의 신분등록관 면전에 출두하였다. 약혼자 쌍방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상호 혼인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쌍방이 이를 긍정한 다음 신분등록관은 약혼자들이 적법하게 부부가 되었다는 내용을 신고함.	
	혼인체결일	
	혼인체결지	
	증인으로서 하기의 자가 임석하였다(가족명, 이름, 주소)	

X. 네덜란드

1. 네덜란드의 신분등록 방법

가. 신분등록과 인구등록

네덜란드의 경우 서구의 다른 나라와 같이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하여 출생·혼인·사망등록부를 두고 있는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동반자등록부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네덜란드에는 이와 같은 신분등록부 이외에 우리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인구등록이 있다. 위 인구등록은 성명, 출생일과 장소, 배우자의 성명, 자녀, 주소, 부모의 성명·출생일·출생장소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1938년에 '한 가족 한 카드' 방식에서 '1개인 1카드'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에는 전산화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나. 역사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네덜란드를 지배한 1810년경부터 프랑스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등록부로 출생, 혼인, 사망 등 국민의 신분관계를 기록하게 되었다. 1811년부터 시청에서 민사신분등록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등 통일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러던 중 1838년 네덜란드 민법전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인 신분등록방법이 통일되었다.

다. 관장기관 및 보관

신분등록인 민사등록은 각 시청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출생, 혼인, 이혼, 사망이 기록된다. 각 시청에서는 등록관이 등록사무를 담당하고, 원본의 기록보관책임을 지는데, 부분은 매년 12월 31일 등록을 마감한 후 지방법원의 기록과로 보낸다.

2. 네덜란드 신분등록부의 내용

가. 출생등록부

(1) 형식

출생등록부는 1면에 2사람분이 기재된다. 이러한 기재는 통상적으로 혼인 중의 자에 대한 기재이며, 혼외자인 경우에는 이 등록에 모(母)에 대해서만 기재된다.

(네덜란드 출생등록부)

<p>이 자(이름)가 父 000(어디 어디 태생)와 母 000(어디 어디 태생) 사이에서 언제, 어디에서 출생하였음. (父의 서명) (등록관의 서명) 사인</p>
<p>이 자(이름)가 父 000(어디 어디 태생)와 母 000(어디 어디 태생) 사이에서 언제, 어디에서 출생하였음. (父의 서명) (등록관의 서명) 사인</p>

(2) 등록사항

출생등록부(혼인등록부, 동반자등록부 및 사망등록부도 같다)는 횡선에 의하여 구분된 5개의 난으로 되어 있고 각 난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

첫 난에는 등록부의 요지로 기재되어야 하는 신고사항, 둘째 난에는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요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고사항, 셋째 난에는 나머지 신고사항, 넷째 난에는 관청보고사항 및 서명, 다섯째 난에는 신분등록관

에 의한 수정, 부기, 삭제가 각 등록된다. 또한, 그 곳에는 추가메모와 별개 서류에 부가되어 있는 추가메모 상의 지시가 기재된다(네덜란드 신분등록규정 Besluit Burgerlijk Stand 제36조, 이하 '신분규정'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신분규정 제43조).

① 제1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자의 姓 또는 임시 姓
- 자의 名 또는 임시 名
- 출생일, 아는 경우 출생 시, 분
- 출생장소
- 자의 性別

② 제2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부의 성명
- 모의 성명

③ 제3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선택된 성 (요건을 갖춘 경우)
- 부모의 출생지 (아는 경우)
- 신고인의 성명, 출생지 및 출생일
- 직무상 등록관으로부터 교부된 명 (요건을 갖춘 경우)

(3) 출생신고 의무자

혼인중에 출생한 자(子)의 출생신고의 신고의무자는 1차적으로 부(父)이고, 제2차적으로는 의사나 출산에 입회를 한 자 등이다.

모(母)는 신고의무자가 아니지만, 신고를 할 권한은 있다(네덜란드 민법 제19의e조 제1,2항).

(4) 신고의무자의 본인출두주의

네덜란드에서는 신고의무자의 본인이 재판의 증인과 같이 등록관청에 출두하는 본인출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나 사자(使者)에 의한 신고나 신고서의 우편송부에 의한 신고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산

육 기간 중인 모(母)는 신고가 불가능한 것이다.

(5) 기타 신고절차

(가) 출생신고의 신고기간은 3일이다. 네덜란드의 국토가 좁고 평지인데다 교통이 편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본인 출두주의가 적용되므로, 신고기간은 등록관이 근무하는 3일로 공휴일은 기산하지 않는다. 근무시간까지가 신고기간의 종기이다.

(나) 출생신고가 지체된 경우의 처리

만약 신고가 늦어지면 검찰관에게 통지되며, 검찰관은 신고의무자를 호출하여 그 사유를 조사한다

(다) 네덜란드에서 신고는 모두 구두에 의한 신고이며, 따라서 신고서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신고서(신고)의 송부와 신고의 수리라는 관념이 분리되어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본인출두주의이므로 등록관이 응대하여 필요한 사정을 전부 청취하므로, 신고불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접수나 수리와 관념상 분화가 없다.

따라서, 신고를 하면 반드시 수리가 되므로, 여기에서 소위 접수와 수리는 동시에 이루어 진다.

(라) 신고서의 불필요 - 등록관의 메모

부친(父親)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출두하면, 등록관은 그 부친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메모지에 기입한다. 즉, 네덜란드에는 신고서가 없다. 본인 자신이 출두하여, 사정을 설명하여 사실을 신고하므로, 신고서가 필요없는 것이다.

신고인은 등록관이 메모한 그 용지와 등록카드 모두에 서명을 한다. 부친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여 신고청취서를 작성하는 데까지는 약 5분이면 절차가 끝난다. 이와 같이 신고청취서를 작성하면, 인구등록 카드계로 보낸다. 거기에서 결재가 나면 신고내용을 타이핑하여 즉시 서명을 하도록 한다. 신고청취서를 인구등록 카드계로 보내는 것은, 그 자술 청취내용이 인구등록카드 기재와 일치하는지(생년월일, 주소, 혼인성립 유무 등에 대해서)를 심사하여,

자술 내용의 진위를 조사함과 동시에, 새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인구등록카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그 자녀의 카드에 부모를 기입하지만, 그 형제 자매까지 기입하는 일은 상당히 수고를 해야 하므로 기재를 하지 않는다.

인구등록카드는 우리의 주민등록표와는 조금 다르며, 우리의 호적과 주민등록표를 합쳐 놓은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진실과 합치되는지를 조회하기 위해서 인구등록 카드계로 보내는 것이다. 가령 갑(父親)이 출두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그子を 갑과 妻 乙(모친)과의 사이의 혼인 중의 자라고 진술하여 신고한 경우, 갑과 乙女가 혼인 중의 자인지 하는 사실은 갑의 인구등록카드를 보면 즉시 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 본인출두주의의 의의

네덜란드에서는 신분등록관계(민사등록)를 위한 신고는 신고인(신고의무자)의 본인출두주의이다. 본인출두주의는 출두한 본인에 대해서, 등록관 자신이 응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이 출두하고, 등록관이 응대하여 사정을 청취하므로, 필요한 것은 모두 질문을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신고(이혼신고도 동일) 등의 창설적 신고에서는 본인의 의사확인이 중요한데, 서면심사와는 달리, 등록관 자신이 본인을 직접 심문하므로, 의사확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본인출두주의에서 본인은 등록관에게 직접 출두하여, 사정을 설명하여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면 된다. 즉, 구두 신고주의이다.

본인출두주의에서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출두만 하면, 등록관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질문을 하고, 신고인은 이에 구두로 대답만 하면 되므로, 별도의 신고서 등은 필요없는 것이다. 이 신고서 불필요는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첫째로 서면이 필요없기 때문에, 제3자에 의한 신고서 위조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둘째, 문자를 쓰지 못하는 사람(문맹)이나 외국계 사람으로 네덜란드어를 쓰지 못하는 사람 등이라도 신고서를 쓰지 못하여 신고를 못하는 일이 없다. 셋째, 신고서의 불비 문제가 없고, 적정한 신고서 작성을 지

도하는 등의 일이 필요하지 않다. 넷째,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등록관 자신이 출두를 한 본인으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서면에 의한 형식심사가 아니라 실질심사에 가까운 것이다.

(6) 인지(認知)의 제한

인지는父가 등록관의 사무소에 와서, 인지선언을 하는 것으로 성립된다. 다만, 혼인한 부(夫)는 다른 여자의 자(子)를 인지할 수 없다.

혼인중인 부(夫) A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 Y를 인지하는 일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인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Y는 A의 법률상의 자가 될 수 없고, 부(父) A의 카드에는 기입되지 않는다. 즉, 인지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 인지가 가능한 경우는 부친이 혼인관계가 없는 독신자일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 즉, "현재 혼인중에 있는 남성은 인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부(夫)가 혼인중에 처(妻) 이외의 딸 여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라도, 처(妻)와 이혼을 하고, 다시 독신자 상태가 되면 이 때에는 인지를 할 수가 있다.

또한, 혼외자의 경우에는 그 친자관계 성립에 있어서, 모자관계까지도 인지라고 하는 특별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지가 없으면 친자관계 성립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모자관계는 분만이라고 하는 사실로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모자관계 성립에 대해서 인지가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다.

나. 혼인등록부

(1) 형식

혼인등록부는 1면이 상·하단으로 되어 있고, 상단에는 부(夫)에 관한 사항, 하단에는 처(妻)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서명을 처, 부의 순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덜란드 혼인등록부)

[夫] (성명) (00년00월00일, 父000, 母000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 (출생장소)
[妻] (성명) (00년00월00일, 父 000, 母000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 (출생장소)
상기 [父]와 [妻]가 여기(시청)에서 혼인하였음. (妻의 서명) (夫의 서명) (등록관의 서명) 사인

(2) 등록사항

혼인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록한다(신분규정 제57조).

① 제1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혼인 전의 배우자의 성명
- 배우자의 출생지 및 출생일
- 혼인 후의 배우자의 성

② 제2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배우자의 부모의 성명

③ 제3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2명의 증인의 성명
- 혼인증서에서 수여된 동의
- 비네덜란드인 배우자의 추정국적 (요건을 갖춘 경우)

(3) 혼인당사자 출두주의 원칙

네덜란드에서의 혼인은 시청에서 일단 결혼식을 거행하므로, 혼인신고(등록)시에 혼인 당사자는 본인들이 모두 시청에 출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혼

인 당사자가 시청에 출두하여 신분등록관에게 혼인신고를 하고, 신분등록관이 이를 수리할 때에는 시청사무소에 설치된 결혼식장에서 신분등록관이 주재하는 결혼식을 거행함으로써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한다. 이 때의 결혼식은 간단하게 치러지고 그 후 필요에 따라 교회 등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민법 제43조 제3항에 "혼인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예비부부의 의사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규정되어 있는바, 실제로 '부부가 출석하지 않고 그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혼인신고에 있어서 본인출두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등록관의 서명

부부의 서명 밑에 등록관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5) 장관의 사인

도장 정도 크기로 장관의 사인을 하는데, 이 사인이 있어야 비로소 이 등록의 진정성이 증명된다.

(6) 혼인연령

혼인연령은 남자 18세, 여자 16세이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동의가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동의가 이를 대신한다.

(7) 이혼등록

미국, 캐나다에서 이혼은 오직 재판소의 이혼재판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혼(재판)의 공시는 재판소의 재판과일(편철)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와 달리, 네덜란드의 경우는 법원의 이혼판결도 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등록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즉,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대리인 등이 이혼판결을 받아도, 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혼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혼인의 해소는 법원의 이혼판결과 그 이혼판결이 신분등록부에 등록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하다. 신분등록에서의 이혼판결등록은 당사자 쌍방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혼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혼재판 후 6개월이 경과되면 법원에서 이혼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여기에서 6개월은 판결확정 후 6개월이다. 즉, 네덜란드의 이혼판결은 모두 그 등록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이혼판결이라도 그 효력발생은 정식으로 등록을 할 때까지는 정지된다는 점에 등록의 강력함을 느낄 수 있다.

다. 사망등록부

(1) 형식

사망등록부는 면 중앙에 횡선(橫線)으로, 상하 2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각단에 사망사건이 1건씩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1면에 2개의 사망사건이 등록되어 있다. 결국, 혼인등록부에는 1면에 하나의 혼인사건만을 기재·등록하고(1면 1건 기재주의), 출생등록부, 사망등록부에는 각 1면에 2개(출생, 사망) 사건이 기재, 등록되어(1면 2건 기재주의) 있다.

(2) 등록사항

사망등록부에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등록한다(신분규정 제61조).

① 제1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사망자의 성명
- 사망자의 출생지 및 출생일 (아는 경우)
- 사망자의 성별
- 사망자의 주소 또는 거소
- 사망일, 아는 경우에는 사망일시 및 분
- 사망장소
- 사망 당시 사망자와 혼인 또는 등록된 동반자관계에 있었던 자의

성명

② 제2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사망자의 부모 성명 (아는 경우)

③ 제3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사망 전에 사망자와 혼인 또는 등록된 동반자관계에 있었던 자의 성명

· 신고인의 성명, 출생지 및 출생일

(3) 신고기간

출생신고와 동일하게 사망신고의 경우도 3일이다.

(4) 사망증명

네덜란드에서는 사람이 사망하면 등록관에 의해 사망등록이 이루어지고, 사망증명이 발행된다. 그리고 매장(埋葬)에 대해서는 해당 사망증명을 한 등록관에 의한 매장허가가 필요하다. 사망신고가 수리되어 사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증명이 발행되지 않아서 매장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등록관이 이 매장허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망에 입회한 의사, 혹은 시검시관(市檢屍官)에 의한 서명이 들어간, 특별사망진술서, 또는 검찰관의 매장에 이의(異議)가 없다는 내용의 공식선언을 수령한 경우에 발행된다.

(5) 사망등록과 검찰관의 관여

만약 사망이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은 '매·화장허가증'을 발행하지 않고, 검찰관에게 사건을 보낸다. 검찰관이 매·화장허가증을 발행하여도 된다고 했을 때 비로소 매·화장허가증을 발행한다. 사망일시가 불분명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같다.

라. 동반자등록부

등록된 동반자관계는 전통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면서 두 사람이 반려자로서 동거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1998. 1. 1.부터 시행된 네덜란드 민법(1997. 10. 4.자 개정법률) 제80의a조 - 제80의g조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이와 같이 등록된 동반자관계에 들어간 자는 동시에 혼인을 할 수 없고, 동반자에게는 기존의 가족법규정 중 '부부의 권리와 의무'(제81조 - 제92의a조), '법상 재산의 공유'(제93조 - 제113조), 및 '혼인계약'(제114조 - 제148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이 경우에 동반자등록부가 작성되는데 그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신분규정 제57의a조)

① 제1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동반합의 전의 상대방 동반자의 성명
· 상대방 동반자의 출생지 및 출생일
· 동반합의 후의 상대방 동반자의 성
· 동반합의일 및 합의장소

② 제2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등록된 상대방 동반자의 부모 성명

③ 제3란에는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기재한다.

· 증인의 성명
· 동반자등록증서에서 수여된 동의
· 비네덜란드인 상대방동반자의 추정국적 (요건을 갖춘 경우)

XI. 북한

1. 신분등록제도

가. 북한에서의 신분등록제도의 의미

북한에서 신분등록제도는 출생, 결혼, 이혼, 입양, 파양, 사망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신분상 변화를 국가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의 기초로 되며, 주민행정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

그들은 신분등록제도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주의적 가족관계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주민행정사업을 강화하며 인민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고,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공고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즉, 신분등록제도의 주민통제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나. 정권 초기의 신분등록제도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국민증에 관한 결정서'등 신분등록제도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제정하였고, 신분등록사업의 종류와 관장기관에 관하여 수차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신분등록사업을 이원화하여 국민등록업무는 지방행정기관인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호적에 관한 행정사무는 사법재판기관이 관장하게 하였다. 1946년 '국민증에 관한 결정서'에서 18세 이상의 남녀는 지방행정기관에 국민등록을 한 다음 국민증을 발급받게 하고, 18세 미만의 남녀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국민증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국민등록을 하며, 국민증교부신청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1947년 '호적사무취급에 관한 결정서'를 제정하여 종래 사법재판기관에서 관장하던 호적에 관한 행정사무 일체를 내무국에 이관하고, 호적사무

정리에 관한 사무는 시·면 인민위원장이 이를 취급하며, 시·군인민재판소는 호적에 관한 행정사무 일체를 1949. 4. 30.까지 시·군인민위원회에 인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52년 '신분등록사업을 내무기관에 이관함에 관하여'에서 시·면 인민위원회가 관장하던 신분등록사업을 내무기관으로 이관하게 함으로써 이원화된 신분등록사업의 관장기관을 내무기관으로 일원화하였다. 나아가 1955년 '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호적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현행 신분등록제도

북한의 현행 신분등록제도의 내용과 근거법령을 소개하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북한법학자도, 북한에서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국민등록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주민들 모두가 수첩형식의 국민증을 소지한다는 이외에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북한의 한 문건은 신분등록사업과 국민등록사업으로 구분하여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신분등록사업은 1961. 11. 6. 내각 결정 제147호 '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과 1962. 3. 13. 성령 제9호 '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국민등록사업은 1961. 6. 23. 내각결정 제107호 '국민증에 관한 규정'과 1963. 12. 27. 성 규칙 제20호 '국민증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각 규율된다.

가. 신분등록사업

신분등록사업은 국민들의 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입양, 파양에 관한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사업을 말하며, 리·읍·노동자구 인민위원회 및 동사무소(이하 신분등록기관이라 한다)가 집행한다. 1997년 발간된 『민사법사전』에서는 시·구역·군 안전부 소속 분주소가 신분등록기관이라고 설명하는바, 일용 신분등록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뒷받침할 다른 자료는 없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이 지도통제한다. 신분등록기관은 공민들이 제출하는 양식화된 신청서에 기초하여 해당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해당 증명서를 교부하며 공민증에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기록하거나 공민증 또는 출생증을 교부 또는 회수하는 방법으로 신분등록을 한다. 그리고 신분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관할시·구역·군 사회안전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출생등록

①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는 출생일로부터 15일,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부모, 후견인, 그를 양육하는 자 또는 양육기관책임자가 출생등록신고서를 거주지 신분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등록기관이 출생등록신고서를 접수하면 출생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출생된 자녀가 출생등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등록신고서와 함께 사망등록신고서를 신분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출생증은 교부하지 않는다.

③ 보호자가 없는 출생아에 대한 출생등록신고에서 출생지는 발견한 지역의 명칭을, 부모 성명과 신분관계는 《불명》이라고 기재하며 성은 해당 양육자의 성을 따르고 생년월일은 발견한 연월일 또는 그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기재한다.

④ 출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또는 신분변경 및 정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거주지 신분등록기관에 출생증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생증을 교환교부 받아야 한다. 이때 신분등록기관은 신청사유를 정확히 검토확인한 다음 출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사망등록

사망등록은 사망자의 가족, 친척 또는 직장책임자가 사망일로부터 15일,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와 공민증 또는 출생증을 첨부한 사망등록신고서를 거주지 신분

등록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이때 사망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3) 결혼등록

결혼등록은 결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동시에 거주지 신분등록기관에 결혼등록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민증에 결혼등록을 받아야 하며 신분등록기관은 결혼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결혼증은 부부 쌍방에게 1매를 교부한다. 당사자 일방이 인민군대 및 경비대 현역군인인 경우에는 주둔 지역의 신분등록기관에서 결혼등록을 할 수 있고, 이때 신분등록기관은 거주지 사회안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이혼등록

이혼등록을 하려는 공민들은 재판소에서 발급한 이혼판결확정문건을 거주지 신분등록기관에 제출하고 공민증에 이혼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이혼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5) 입양등록

입양등록을 하려는 공민들은 입양에 관한 결정서와 입양등록신청서를 친부모 또는 후견인의 거주지 신분등록기관에 제출하고 출생증을 교환교부 받아야 한다. 한편, 파양등록을 하려는 공민들은 파양에 관한 결정서 또는 재판소가 발급한 파양판결확정문건과 파양등록신청서를 양부 또는 양모의 거주지 신분등록기관에 제출하고 출생증을 교환교부 받아야 한다.

(6) 신분등록사항의 변경 등

성명·연령 등 신분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 또는 정정허가신청서를 거주지 시·구역·군 사회안전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지 신분등록기관은 신분변경 또는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그 사유를 검토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첨부하여 관할 사회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변경 또는 정정허가신청서에는 사진 1매, 보증인 2명, 본인의 경력과 가족관계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신분등록증명서 발급

신분등록기관은 신분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분등록증명서는 출

생, 사망, 결혼, 이혼, 입양, 파양에 관한 신분관계를 공민들의 구두신청에 따라 공민증 및 출생증 또는 신분등록기관에 비치된 대장에 근거하여 발급한다. 신분등록증명서를 발급하면 접수처리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공민등록사업

공민등록사업은 공민증의 교부, 거주 및 퇴거등록, 체류 및 숙박등록에 관련된 사업을 말하며,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하다. 공민등록 사무는 시·구역·군 사회안전부가 직접 담당하며, 거주 및 퇴거등록 사무는 리·노동자구 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 리·노동자구 사회안전주재원은 공민증교부 신청문건을 접수한다.

북한에서는 북한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남녀에게 공민증이 발급되며, 다만 행위무능력자는 예외이다. 공민증은 일반공민증과 임시증명서의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임시증명서는 신분을 정확히 판명할 수 없거나 공민증분실 사유가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에 교부되며 추후 신분 등이 확인되면 일반공민증이 교부된다. 한편, 북한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의 남녀는 출생증을, 북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거주증을, 일시적으로 입국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권·입국사증·간이증명서를 각 소지한다(법학사전 32쪽).

(1) 공민증교부절차

① 공민증을 교부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민증교부신청서를 거주지 시·구역·군 사회안전부 또는 사회안전주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만 18세에 달한 자는 출생증 및 그가 등록된 공민증을, 북한 국적에 입적한 자는 입적증명서를, 외국으로부터 귀국한 공민은 귀국증명서를, 인민군대 및 경비대 제대자는 제대증명서를, 정신병이 완치된 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그가 등록된 공민증을, 교화소 석방자 및 노동교양소 출소자는 석방 또는 출소증명서를, 공민증을 오손 마멸한 자는 오손 마멸된 공민증 또는 공민증 회수증명서를, 신분을 변경 또는 정정한 자는 신분변경 또는

정정허가증과 공민증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민증교부신청서는 2매를 작성하되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사진 3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민증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사회안전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민증을 분실하면 즉시 분실한 지역 또는 거주지의 사회안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3개월을 기한으로 하는 임시증명서가 교부된다.

⑤ 정정, 삭제, 첨가, 오손 등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공민증 및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시증명서는 사회안전기관이 이를 회수하고 공민증회수증명서를 발급한다.

(2) 공민증의 형식

북한귀순인사를 상대로 실시한 면접조사결과에 의하면, 공민증은 첫 면에 본인의 사진을 붙이고 공민증번호와 거주지지역 및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고(예컨대 "3817506 중구역 14587"로 기재된다.),

다음 면에는 이름·성별·민족별·생년월일·출생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면에는 직장·직위·거주지의 주소와 분주소·결혼란·가족란·혈액형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사회안전부 주민등록과에서 주민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주민등록대장은 당간부와 주민등록일군 이외에는 열람하거나 사본할 수 없고 신원조회를 위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도 당책임자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대장에는 세대주 서명,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출신성분, 사회성분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가족관계로는 고조부부터 직계 8촌까지 현재까지의 행적·직업·재산관계·본관 및 향렬·혼인관계·자식관계 등을 기재하고, 기재내용의 진실성은 본적지의 토착주민 7명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증한다고 설명한다. 북한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이와 같은 주민등록대장이 작성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통일 후 호적제도를 복구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3) 거주·퇴거등록 절차

① 거주지에서 이주하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신청서를 거주시 사회안전기관 또는 신분등록기관에 제출하고 공민증에 퇴거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공민증의 가족란 등록자가 개별적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가 등록된 공민증에서 삭제하고 공민증의 가족란 삭제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평양시·개성시로 퇴거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시·구역·군 사회안전부장의 명의로 퇴거등록을 한다.

④ 거주지를 이동한 공민은 새 거주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거주등록신청서를 사회안전기관 또는 신분등록기관에 제출하고 공민증에 거주등록을 받아야 한다.

⑤ 개별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공민증 가족란 등록자에 대하여는 새 거주지 해당 등록기관에서 공민증 가족란 삭제증명서를 받고 해당 보호자의 공민증에 등록한다.

(4) 체류·숙박등록절차

① 공민이 1개월 이상 타지역에 가서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지역 사회안전기관 또는 신분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체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거 및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공민이 거주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숙박하려는 경우에 숙박자와 숙박주는 해당지역 사회안전기관 또는 리·읍·노동자구 인민위원회에 숙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우리 나라의 호적제도 및 전산호적 발전방향

1. 호적제도 현황

1. 호적사무

가. 호적의 의의

(1) 호적은 우리 나라 국민 개인의 신분관계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적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4편 제2장은 “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제778조 내지 제799조를 두고 家, 호주, 가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되고(민법 제778조), 그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가 가족이 된다(민법 제779조). 민법이 정한 家는 관념상의 가족단체로서 호주와 가족에 의하여 구성되는데, 이와 같은 민법상의 家별로 호적법 제15조에서 정한 각종의 신분등록사항을 기재한 것이 호적이다(호적법 제8조).

(2) 따라서, 家의 구성 및 구성원에 관한 기본 원칙은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 원칙에 따라 호적을 기재하는 방식과 절차는 호적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뿐만 아니라 민법상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은 호적의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법은 신분에 관한 실체법이고, 호적법은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절차법에 해당한다.

나. 호적사무의 성격

(1) 호적사무는 민법의 일부인 가족법과 이에 기초한 호주제도에 터잡아 가족관계를 공증하기 위한 호적부를 작성·관리하고, 민법과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의 신고나 신청 등을 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호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법과 호적법을 비롯한 다수의 실체법규에 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신고 및 이에 기초한 호적 기재의 효과는 개인적인 신분관계 외에도 상속관계를 비롯한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기재에 앞서 가정법원의 재판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므로, 호적사무는 그 성격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에 사법적인 성격이 강한 준사법적 행정사무라 할 수 있다.¹⁾

다. 호적사무의 연혁

우리 나라에서 호적이 법률상의 제도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1923. 7. 1. 조선후호적령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이다. 조선후호적령은 호적사무의 준사법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호적사무의 관장은 부윤(府尹) 및 면장이 담당하고 감독사무는 지방법원장 및 그 지청(지원에 해당함)의 상석판사의 소관으로 하였다. 1949. 9. 26.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호적에 관한 사무를 법원에서 관장 또는 감독하고(제2조 제3항), 법원 내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호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제19조) 규정하였다.²⁾ 그 후, 1960. 1. 1. 현행 호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종전의 조선후호적령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호적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사무는 시(구)·읍·면장이 관장하되(호적법 제2조), 법원(법원행정처 및

1) 호적법 제125조 내지 제129조는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절차를 밟지 않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호적사무가 그 성질상 사법행정사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건국직후 위 법원조직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등기·호적과 같은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또는 감독기관을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데, 국회에서는 이를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의원입법으로서 위 법원조직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위 법원조직법이 제정됨으로써, 등기·호적 등의 사법행정사무는 사법부에서 관장 또는 감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가정법원·지원)이 중앙관장기관 및 감독기관으로서 전국적인 사무를 총괄하고 이를 감독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조 제3항, 호적법 제4조).

라. 호적사무 관장·감독

(1) 중앙 관장·감독기관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는 호적사무를 총괄하는 중앙관장기관 및 중앙감독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호적법시행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고, 규칙으로 정하기 곤란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는 호적예규로 정하여 업무의 통일을 기하고 있으며,³⁾ 호적관서나 민원인이 제출한 호적법규·호적사무처리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⁴⁾ 뿐만 아니라, 호적부의 한글 타자화, 호적의 전산화 사업, G4C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산정보자료의 교환과 같은 호적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다.

법원행정처에는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설치하여 호적전산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5월부터는 전국의 호적전산정보자료를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로 이관하여 집중시킴으로써, 전국의 전산 호적부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

(2) 구체적 호적사무 관장기관(호적관서)

구체적인 호적사무는 시·읍·면장이 관장하며, 그 호적관서의 수는 2003년 2월 현재 1,637개에 이른다. 시·읍·면장은 호적사건의 접수, 수리, 기재, 수수료의 징구, 기재를 마친 호적 신고서류의 법원 송부, 과태료 징수 및 각종 부책의 작성·보존 사무를 담당하며, 호적사무 담임자를 임명하여 호적사

3) 1923년부터 2002년까지 634건의 예규 제정 및 개정을 하여 이를 예규집(수록된 예규의 수 합계 3,927건)으로 발간하였다.

4) 호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질의 내용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선례책자로 발간하여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총 4권의 호적선례집(수록된 선례의 수 합계 1,714항)을 발간하였다.

또한, 호적관서나 민원인으로부터 호적법규, 호적사무처리와 관련된 서면질의(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1,463건), 전화질의(연평균 약 3,500건)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구체적 호적사무 감독기관(법원)

시·읍·면장이 처리한 구체적 호적사무에 대한 감독은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에서 담당한다.⁵⁾ 감독법원은 시·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호적 신고서류를 조사하여 보관·관리하고, 호적사무 담임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권 호적정정에 관한 허가 및 보고와, 호적관장자 및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 그리고 호적사무에 관한 지시·통첩을 통하여 호적사무를 감독한다.⁶⁾

2. 호적부·호적기재사항

가. 개요

(1) 호적에는 호주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들로서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를 기재하게 되며(호적법 제16조), 이들에 관하여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호적법 제15조).

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5) 54개소의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에서 호적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무인원 218명, 사무실 면적 2,956㎡(약 894평), 관련장부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의 면적이 6,216㎡(약 1,880평)에 이른다.

6) 그밖에도 법원은 호적법 제120조 내지 제123조 등에 정하여진 호적정정, 개명, 취적 등의 절차에 있어서의 허가와 관련 재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호적사무에 관여하고 이를 감독한다.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 이와 같이, 호적에는 호주와 가족 간의 신분관계와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가 기재되며, 家의 구성원 각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중요한 신분변동관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재하게 되므로, 호적에 의하여 호주와 가족의 신분사항이 일목요연하게 공시되고 있다.

나. 호적부·제적부

(1) 과거에 호적부·제적부는 종이 장부의 형태로 편제되었으나, 1998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추진한 결과, 2002년 11월 전국의 호적부가 전산 호적부로 전환되었다.⁷⁾ 그 결과 현재 호적부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편제·관리되고 있으며,⁸⁾ 호적사무 및 호적등본 발급사무 역시 전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제적부는 호적관서에서 80년 동안 보관하면서 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직 종이 형태로 남아 있으므로 이를 전산 이미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2) 2003년 2월 현재로 전국의 호적부·제적부는 약 1,273만 건이며, 호적·제적 구성원수는 약 7,041만 명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이루어진 호적신고 건수는 2000년 2,173,037건, 2001년 2,151,717건, 2002년 2,233,617건이다.

7) 다만, 전산입력이 불가능한 오류가 있는 호적부일부와 무연고 호적부(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부)는 전산이기가 보류되었으며, 종전과 같이 종이 장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8) 호적법 제124조의3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호적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에 기록하여 작성하며,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호적을 축적하여 호적부로 하고,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제적을 축적하여 제적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호적기재사항

(1) 전산 호적부는 호주 및 가족에 관한 호적기재사항이 별지 1 호적등본 양식에 따라 현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 호적기재사항이란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법이 정한 호적기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기 위하여 호적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호적기재사항은 호적사항과 신분사항으로 크게 나뉘며, 신분사항은 다시 특정신분사항과 일반신분사항(협의의 신분사항)으로 나뉜다.

(가) 호적사항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호주와 가족 전원의 공통된 사항으로서 본적과 호적(家)에 관한 사항(이를 협의의 호적사항이라고도 한다)을 말한다.⁹⁾ 여기에 서 본적은 家의 소재지¹⁰⁾를 말하며, 호적에 관한 사항이란 家의 창설·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다.¹¹⁾

(나) 신분사항

신분사항은 호주와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 중 특정신분사항은 호적부의 기재란이 특정되어 있는 신분사항으로서, 성명, 부모성명, 성별, 본, 호주와의 관계, 전호적, 입적 또는 신호적,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이에 해당한다.¹²⁾

일반신분사항(협의의 신분사항)은 호주 및 가족의 신분사항으로서 특정신분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사항을 말하며, 출생, 혼인, 인지, 입양, 사망, 입적, 복적 등을 말한다.¹³⁾

라. 호적부의 공개

9) 별지 1 호적등본 양식의 ①, ②란에 기재된다.

10) 관념적인 소재지를 의미하며 실제 거주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1) 호적법 시행규칙 제54조는 ① 신호적 편제에 관한 사항, ② 호적(제적) 전부의 재제·정정·말소·제적에 관한 사항, ③ 본적의 경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 별지 1 호적등본 양식의 ③ 내지 ⑤ 및 ⑦ 내지 ⑩란에 기재된다.

13) 별지 1 호적등본 양식의 ⑥란에 기재된다.

호적부는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의하여 공개된다(호적법 제12조).

과거에는 종이로 된 호적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등·초본이 교부되었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상인 호적부가 보관되고 있는 호적관서에서만 호적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부가 전산화됨에 따라, 열람은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열람목적으로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등·초본의 교부는 호적부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호적법 제124조의4), 이에 따라 호적관서의 관할구역과 무관하게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이 설치된 곳에서는 전국의 모든 호적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 및 가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사람, 호적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 없이 호적부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들도 호적부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신청서에 반드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청구가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부당한 목적임이 분명한 때에는 그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호적법 제12조 제2,3항, 호적법시행규칙 제21조).

3. 호적제도의 특징

현행 호적의 편제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적 편제방식

(1) 각 개인의 신분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은 인적 편제방식과 사건별 편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편제방식은 각 개인마다 출생과 동시에 등록카드를 설정하여 그 사람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발생한 중요한 신분사항을 계속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사건별 편제방식은 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을 별도의 사건으로 기재한다. 인적 편제방식에서는 각자의 신분변동이 차례대로 신분등록부에 기재되므로 어느 사람의 신분등록부만 보면 그 신분관계에 대한 모든 사항을 바로 파악할 수 있지만, 사건별 편제방식에서는 출생·혼인·사망 등이 사건별로 따로따로 등록되고 그 등록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 관한 신분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2) 외국에서는 인적편제를 하고 있는 나라, 양자를 병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사건별 편제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과 중국은 인적편제방식·가족등록방식이고, 미국과 영국은 사건별 편제방식이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은 출생·혼인·사망에 대해서 별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고 여기에 이혼·입양 등을 부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사건별 편제방식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출생증서에 사망·혼인을 난외에 부기하는 방법이 고안되어 이 방법으로 인적편제 방식의 이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에는 가족수첩이라고 하는 관행상의 제도가 있어서 인적편제 요소를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첩은 신분증서와 동일한 증명력이 부여되었고, 독일의 가족수첩은 1924년 신분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증명력이 부여되었으나, 현재는 새로이 가족부로 제도화되어 있다.

(3) 우리 호적법은 국민 개개인을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족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중요한 신분 변동사항을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그 사람의 호적 중 신분사항란에 집중하여 기재함으로써, 특정인의 신분변동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 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개인의 신분사항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고를 기초로 기재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의 직권 기재를 허용함으로써 신분사항이 충실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가족별 등록방식

(1) 인적 편제방식에는 하나의 등록카드 속에 가족을 한 단체로서 기재하는 가족별 등록방식과 각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카드를 작성하는 개인별 등록방식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상호간의 신분관계에 대한 파악에 차이가 생긴다. 개인별 등록카드방식은 각 개인별 등록카드에 그 사람의 신분사항을 차례대로 그 때마다 기재해 나가는 방법이다.

(2) 우리 민법·호적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을 단위(민법 제779조)로 하나의 호적을 편제하고, 그 호적 내에 호주와 가족의 호적란을 개인별로 설치하는 가족별 등록방식을 취하고 있다.

家を 구성·유지하기 위하여 호주가 중심이 되므로,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호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편제하게 되며, 호주가 사망 등의 사유로 호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 호주를 승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민법 제980조). 1991년 민법 개정 전에는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의 호주상속이 인정되었으나 민법 개정에 따라 임의적 호주승계로 전환되었고(민법 제980조 이하), 호주의 권한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족에 대한 후견적인 기능을 가지는 정도로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현행의 호주는 가족을 구성하는 기준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밖에 없을 정도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호주의 가족으로 입적할 수 있는 자는 그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이다. 혼인한 경우 처는 夫의 家에 입적하며(제826조 3항)¹⁴⁾ 자는 父의 성을 따르고 父의 家에 입적하며(민법 제781조)¹⁵⁾, 호주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다른 家의 호주가 아닌 한 호

14)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처의 家에 입적할 수 있다(민법 제826조 3항).

15) 다만, 父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夫가 처의 家에 입적한 경우에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하며(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826조 제4항), 父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주의 家에 입적할 수 있다(민법 제785조)¹⁶⁾. 이에 따라 호적법도 혼인으로 신 호적을 편제할 경우 夫를 호주로 한 호적을 편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호적법 제19조의 2).

(3) 이와 같은 편제방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종의 관계(직계친족)와 형제자매·종형제의 횡의 관계(방계친족)에 있는 친족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일 호적에 있는 가족들의 신분기록이 하나의 호적부의 형태로 묶여 연결되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기록된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발생된 신분사항을 다른 사람의 신분사항에도 기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기재를 간략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 상호간의 친족관계를 일괄적으로 공시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근친혼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상속인을 명확하고 쉽게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신분공시제도로서는 가족별 등록방식이 개인별 등록방식보다 더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우리와 같은 가족별 등록방식을 취한 일본의 경우에, 과거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家로 집단기재를 하였으나, 현재는 하나의 부부 단위(부부와 그 사이의 성이 같은 미혼 자녀)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녀가 결혼을 하면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므로 3대 호적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부부동성 및 그 사이의 자녀도 같은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에 따라 동일호적 동성원칙을 따르고 있다.

다. 이기(移記) 등록방식

(1) 이기주의 기재방식이란 국민의 호적신고서류를 호적사무관장자인 시·읍·면장이 그 신고의 내용을 호적에 이기하여 이를 공시·공증하는 등록방식이다. 이러한 이기주의 기재방식에 비하여 국민이 신고한 서류를 바로 편철하는 파일방식인 편철등록방식이 있다. 이러한 파일방식은 미국과 캐나다

16) 처가 夫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夫의 동의를 얻어 그의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784조).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등록방식이다.

(2) 우리 호적법은 특정인의 신분사항에 관한 신고내용을 그의 호적에 모두 이기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기주의 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기주의 기재방식으로 인하여 호적사무 담당자가 호적신고내용을 호적부에 이기할 때는 신고서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전제로 된다(형식적 심사권). 따라서 호적사무 담당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적사무 담당자의 능력에 따라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호적의 공적인 증명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 호적이 이기주의 기재방식을 취함으로써 인하여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가 적법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호적신고내용을 호적에 이기하는 단계에서 형식적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중혼이나 근친혼이 걸러지고, 인적 편제주의와 결합하여 신고의 수리만으로 창설적 신고를 인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라. 호적 사이의 연결기재

(1) 개인별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부에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모든 신분사항을 기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하기까지의 등록사항의 이동은 없게 된다. 그러나 가족별 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호적법은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 사이의 연결기재가 이루어진다. 즉, 가족 중 1인이 분가,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새로운 호적에 편제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호적에 기재되었던 신분사항을 새로운 호적에 이기한다.

(2) 이적자(移籍者)의 호적변동내용과 종전의 호적에 속한 사람들과의 친족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이적 전후의 호적을 서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전의 호적에는 새로운 호적의 표시('입적 또는 신호적란'에 본적과 호주의 성명)를 기재하고, 새로운 호적에는 종전 호적의 표시('전호적란'에 본적과 호주의 성명)를 기재함으로써 이적 전후의 호적을 연결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 나라 호적은 호적의 편제변경에 따라 원래의 호적기재와 이기한 신호적의 기재 사이에 색인(索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신분관계자 사이의 친족관계 연결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호적의 제적부는 80년간 보존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제적부를 검색함으로써 광범위하게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관계에 필요한 신분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이에 비하여 개인카드방식에는 본인 외의 다른 신분관계자들은 성명 등 기본적인 사항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들의 동정·현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별도로 검색하여야 하며, 夫, 妻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지만 형제자매나 조부모를 확인하고 그들의 생사 등 현상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여러 차례 검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번거롭다. 다만, 개인카드가 모두 전산화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검색을 위한 연결 기능이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다면, 장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마. 신고주의

(1) 일반 사항

호적사유 중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기재사유는 신고이며, 대부분의 호적기재는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¹⁷⁾

호적신고는 출생이나 사망과 같이 이미 발생한 일정한 사실과 이미 성립된 법률관계를 보고하는 보고적 신고와, 혼인이나 협의이혼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신분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는 효력을 가지는 창설적 신고로 구분된다. 창설적 신고 사항은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신고와 실제적인 사실 사이에 괴리가 없다. 그러나 보고적 신고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이미 발생한 사실과 호적 사이에 괴리가 있

17) 다만, 호적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호적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실호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호적공무원이 직권으로 호적기재를 할 수 있다.

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와 신고기간을 정하고 있고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주요 신고사항인 출생, 혼인, 이혼, 사망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출생

출생신고는 출생이라고 하는 이미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그러나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호적법 제62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창설적 효력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혼인중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출생자가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51조, 제55조).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지만, 출생자의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다.¹⁸⁾

혼인외의 자는 부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부의 家에 입적할 수 있으나, 부의 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의 家에 입적할 수 있고, 모의 家에도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한다(민법 제859조, 제782조). 부를 알 수 없는 혼인외의 자는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¹⁹⁾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호적법 제49조 제4항). 그러나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

18)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19) 혼인외의 자가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의 성명을 알 수 있는 경우라도 부의 인지가 없는 한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는 없다.

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명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신고의 신고기간은 1개월이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3) 혼인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중의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거나 구술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호적법 제36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지만, 혼인당사자 쌍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사자를 시켜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다(호적법 제36조 제3항). 혼인신고는 남편이나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며, 외국에 있는 우리 나라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호적관장기관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 혼인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혼인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동의를 얻을 것, 혼인이 금지된 친족간의 혼인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내의 혼인이 아닐 것 등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여 혼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한다.

(4) 이혼

이혼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가) 협의상 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 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

원)이나 시·군법원²⁰⁾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호적법 제79조의2 제1,2항), 3월을 넘긴 때에는 그 확인은 그 효력을 잃는다(호적법 제79조의2 제3항).

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혼당사자인 부부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중의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당사자 일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의사 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다른 일방이 이혼신고를 할 수 없다.

(나)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은 그 재판(조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므로 그 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해당하며, 신고할 때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지 않다. 재판상 이혼신고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자가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재판·조정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5) 사망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호적법 제88조 제1항),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 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94조, 제55조).²¹⁾

20) 부부 쌍방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당사자 쌍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

21) 그밖에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이들은 신고의무자는 아니므로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며,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할 수 있다.²²⁾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호적법 제87조 제1항),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²³⁾을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바. 대한민국 국적의 공시 기능

호적은 대한민국 국민만을 등재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호적에 등재되므로, 호적에 입적한 자는 우리 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을 받게되며, 호적은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 자료로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 국적법은 혈통주의와 부자 동일국적주의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으므로 한국인의 자로서 출생한 자는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한국인 부모의 호적에 그들의子を 등재하는 것은 그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 된다.

II. 현행 호적제도에 대한 평가

1. 신분 공시에 관한 우수한 신분등록제도

우리의 호적제도는 여러 외국의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친족관계의 파악

22)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23) 동(리)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일본 당국에 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훨씬 간편하고 시스템적으로 정확하여, 신분을 공시하는 등록제도로서는 상당히 완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호적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 호적사무와 호적감독사무는 사법부의 대법원(법원행정처)·가정법원(지원)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적절히 분장함으로써, 호적의 사법적인 행정사무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는 충실한 신분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신분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자신의 호적제도에 관하여, "일본의 호적제도는 명실공히 세계제일의 제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선진제국과 비교하여 한층 우수한 제도"라고 하거나, "일본의 호적구조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호적이 가족과 아울러 개인의 신분을 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호적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며, 시·읍·면 사무소로부터 호적등·초본 등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호적은 취학·취직 등의 절차, 여권 교부나 보험금 등의 수급절차, 상속을 비롯한 권리관계 분쟁의 증명자료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적인 시민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적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공적인 신분등록제도로서 정착되어 국민의 생활에 기초를 이루고 있다.

2. 호주·호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한편, 우리의 호주제도 및 호적제도에 관하여 가부장적 제도라거나 양성평

등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 헌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와,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헌법 제36조)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호주제도 내지는 家의 개념과 이를 공시한 호적제도를 폐지 내지는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친족법상의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계혈통주의에 입각하여, 호주의 지위 및 家의 구성·입적이 夫 내지는 父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²⁴⁾ 호주의 승계순위도 남계혈족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²⁵⁾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을 家에 속하게 함으로써 家의식 속에서 유발되는 여성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의식을 낳게 하고 있고, 전통적인 家 내지 호적으로서는 다양한 생활양식이나 가족형태를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 내지는 폐지하여 인본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자가 父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이 양성평등에 어긋나므로, 호주제의 폐지와 더불어 이를 개선하여 자가 父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현재 호주제 폐지에 관한 찬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의 신분등록 대안 논의

24) 예를 들어, 자의 부가(父家) 입적 원칙에 따라 부부가 이혼한 경우 모가 자의 친권자로서 실제로 자를 보호·교양하고 있더라도 모가의 호적으로 이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한, 처에게 夫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夫의 동의를 얻어야 그 家에 입적시킬 수 있으나(민법 제784조 1항), 반면에 夫에게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처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입적할 수 있으므로, 부계혈족 중심으로 家가 구성되어 있다.

25)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의 순위를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가 유아이거나 어린 아동일 경우에도 제1순위로 호주를 승계하여 家를 대표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를 이을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과 연결된다고 비판되고 있다.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의 대안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3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²⁶⁾

가. 기본가족별 편제방안

(1) 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가족 단위로 하여 가족부를 구성하여 신분등록을 편제하는 방안이다. 가족의 구성원칙으로는, 부부동적의 원칙, 친자동적의 원칙, 2대 가족의 원칙, 성과 본 결정에 있어서의 부모양계혈통주의 지향 등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가족을 대표하던 호주를 없애는 대신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을 행정적 사무처리와 검색의 편의를 위한 '기준인'으로 정하여 현재의 호적을 재편하려는 것으로서, 일본의 호적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기본가족별 편제방안은 일정한 기준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 가족 전체가 공시되는 현행 호적부의 기능이 대부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가족부의 가족 구성원칙으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를 반영하기 어렵고 또한 호주제와 마찬가지로 가족 단위로 신분등록부를 구성함으로써 인하여 가족 중 혈연 구성이 다른 사람이 있거나 그 가족에 구성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실이 가족부를 통하여 외부에 드러나게 되어²⁷⁾ 사회적인 차별의식을 낳을 수 있으며, 신분변동사유가 발생될 때마다 가족 구성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현행 호적 관리 행정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

현재의 주민등록표에 개인별 신분등록 자료를 추가하여 기재함으로써 주

26)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장·단점에 관한 논의는 참고문헌으로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27) 구체적으로는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모가 이혼한 자녀에 관한 신분기록을 부모 중 누구의 가족부에 편제할 것인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민등록 자료와 개인별 신분자료를 함께 관리하는 방안이다.

개인별 주민등록과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보면 개인별 신분등록 편제방안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주민등록은 세대 단위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세대의 개념은 혈연 및 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가족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호적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제도로서 속인적·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주민등록제도는 인구행정의 기본정보를 처리하는 사무로서 사람의 거주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지역적·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자료의 공개 범위 및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 개인별(1인 1적) 편제방안

(1) 1 사람에게 대하여 1 개의 신분등록부를 편성하여, 현행 호적제도에서 기재하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신분변동 과정을 모두 기재하는 방안이다. 한번 호적이 편성되면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사유가 있어도 그러한 변동사항만을 추가로 기재할 뿐 다른 호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신분자료를 개인별로 편제할 경우의 신분등록부 양식으로는 별지 2와 같은 양식이 제안되고 있다.

(2)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는 가족단위로 신분등록을 편제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인 차별의식과 신분등록 관리 행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이 제도는 호주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로서 가족 제도를 존중하는 우리의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점, 그리고 현재 가족별로 구성된 호적자료를 개인별 신분등록부로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야 하므로²⁸⁾ 이에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

28) 구체적으로는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의 보완·정비가 필요한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Ⅲ. 전산 호적 발전 방향"에 관한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개인별 신분등록부에는 종전 배우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호적부상 전호적이나 입적란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가 상당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전호

로 지적되고 있다.²⁹⁾

4. 향후 전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도, 가족제도, 姓의 결정,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호적제도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어 왔고 국민 개인 및 가족의 생활에 직결되어 왔다.

따라서, 호적제도가 폐지될 것인가, 그리고 폐지된다면 위에서 살펴 본 3가지의 대안 중에서 어떠한 신분등록제로 개선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동안 위 제도의 기초가 되었던 가족 내지는 혈통주의에 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가의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원칙과 양성평등 및 모성 보호의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범국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기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 다만, 호적 실무적으로 볼 때에, 호적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호적부가 과거와 달리 모두 전산화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산화된 호적을 어떻게 발전·개선하는가에 따라, 호주제 및 가족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으며, 또한 위에서 본 기본가족별 신분등록 편제방안과 개인별 신분등록 편제방안에 관한 대립 문제를 근

적(제적)을 일일이 살펴서 전혼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비용과 인력 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이 개인별 신분등록부를 작성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당시 호적에 나타난 혼인관계에 한하여 배우자(종전배우자 포함)를 이기하고, 그 전의 배우자관계는 종전의 제적부를 열람하게 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개인별 신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자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현행의 본적과 비슷한 신분등록지(기준지)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9) 이와 같은 문제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개인별 신분등록 방안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앞으로 전산 호적이 발전·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관하여 살펴 본다.

III. 전산 호적의 발전 방향

1. 서론 : 전산 호적의 기능

호적 전산화의 결과 기존의 호적부는 모두 전산 호적정보자료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호적은 종이 호적부와 같은 단순한 물리적인 자료가 아니라, 전산 방식으로 입력된 신분자료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검색·분류·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정보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전산 호적은 현행 호적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인 신분관계의 정확한 공시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산 호적의 데이터베이스는 더욱 정확하게 정비되어야 하며, 또한 호적 구성원 상호간의 인적 관계 연계기능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록 호적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게 되므로, 호적부에 포함된 가족 전체가 아니라 대상이 된 구성원만 골라서 신분자료를 현출시킬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 호적부에 기재되는 신분사항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신분사항만을 골라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분사항의 공개범위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조금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신분등록자료 색인 기능 :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보완

가. 우리의 호적은 가족별 인적 편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그 가족을 특정하는 기준으로 본적과 호주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의 호적을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개인이 어느 가족의 호적에 속하는가를 파악하여 하는데, 본적과 호주에 의하여 그 호적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이 본적과 호주는 가족별 인적 편제방식에 있어서 유일한 색인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나. 그러나 호적이 전산화된 이후에는 본적과 호적 이외의 방식에 의하여서도 신분등록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호적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산방식에 의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을 부여한다면 본적과 호주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바로 가족 구성원의 호적부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적과 호주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별 등록제도가 주장될 수 있는 기초는 이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검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호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제대로 검색할 수 없는 비율이 약 1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주민등록번호만에 의존한 검색은 불가능하므로, 현재와 같이 본적 내지 호주에 의한 색인기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성명·생년월일·부모성명 등의 자료에 기초한 검색이 보완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검색기준을 복수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므로, 개인별 신분사항에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의 보완은 새로운 제도는 아니며, 오히려 현행 호적법에 맞게 호적정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불실호적의 정비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에서는 2003년도 9월 이후에 주민등록전산

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 전산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가족관계의 확인 기능 : 부모 주민등록번호 보완

가. 우리의 호적제도가 다른 나라의 신분등록에 비하여 우수한 부분은 호적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명확히 공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가족 사이에 가족관계가 호적부에 기재되므로, 호적부에 의하여 형제 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호적제도를 갈음할 신분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앞에서 본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호적제도 대안 중 가족별 편제의 경우에는 현재의 호적과 유사한 형태로 편제될 것이므로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별 등록제도의 경우에는 부모 및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어느 개인과의 가족관계가 연결되는데, 현재 호적부에는 부모란에 이름만 기재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인별 신분자료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부모란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보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호적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을 부모나 자녀로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름밖에 기재할 수 없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므로 그의 신분등록 사항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³⁰⁾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개인별 등록제로 전환할 당시의 호적부를 검색할 수 있는 연결고리³¹⁾를 등록하고, 현재의 호적부 및 제적부를 함께 보존하여

30)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문제된 가족 이외의 다른 가족에 관한 신분등록사항을 확인하여 역추적 하면 검색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야 할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함으로써 색인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현재의 호적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1) 현재의 호적부에는 부모란에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어느 사람의 부모가 본인과 같은 호적에 있지 않다면 그 호적만을 보아서도 부모 이름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가(父家)에 입적된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에 같은 호적에 있는 딸을 제외하고 모가 누구인지는 이름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연결고리도 전혀 없으므로, 호적만으로는 모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아닌 자가 혼인한 때에는 법정분가하여 제적시키고 신호적을 편제하므로, 분가 후의 변동 사항은 신호적을 다시 찾아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호적부가 신호적 편제나 전적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녀의 기재를 이기하지 않게 되면, 새로운 호적만 보아서도 그의 자녀를 알 수 없으므로 종전의 제적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상당한 불편을 낳게 된다. 어느 사람의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그의 자녀가 누구이며 현재 생존하고 있는지, 만약 그 중 일부가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한 자의 자녀는 누구이며 현재 생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과거와 현재의 호적부를 일일이 찾을 수밖에 없어 상당히 번거롭다. 또한, 호적부와 제적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을 확인함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사항까지도 외부에 공개되는 문제가 생긴다.

(2) 신분관계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부모·자녀 관계를 기본단위로 하여

31) 예를 들어, 전환전 호적의 본적 및 호주 등.

구성되고, 이는 혼인·이혼·출생·사망에 의하여 형성되고 소멸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별적인 신분관계 검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현재 家 단위로 묶여 있는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를 개인별로 분류하고 배우자 및 부모·자녀에 관한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되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상호 연계를 위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배우자 및 부모라는 관계의 표시와 그들의 주민등록번호이므로, 호적상 호주와 가족의 신분기재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는 부모란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³²⁾

4.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 구조개선의 효과

가. 신분정보 제공서비스의 다양화

본인과 아울러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완되어, 현행의 본적 및 호주 외에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신분자료에 관한 색인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실로 다양한 신분정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본인의 신분사항에 기초하여 부모를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그 부모의 신분사항을 검색하면 조부모와 형제를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을 부모 모로 한 자녀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 검색된 사람에 기초하여 그가 등재된 호적부에 기재된 신분사항 중 일정한 범위의 자료를 조합하면, 단순히 현재의 호적부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신분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개인의 신분정보만을 추출할 수도 있고,³³⁾ 비록 자녀가 분

32)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호적부 뿐 아니라 과거의 제적부를 검색하여 부모의 신분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호적 이전에 제적 처리된 제적부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종이 장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호적 관서에 흩어져 있어 그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부모 주민등록번호 보완 작업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이 제적부를 전산 이미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부모를 공통으로 하는 자녀를 모두 골라 신분정보를 조합한 하나의 신분증명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이에 더하여 그의 부모까지 추가한 3대의 신분증명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³⁴⁾ 물론, 호적 자체에 대한 등본을 요구하면 이를 교부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나. 호적제도의 단점 보완 및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사전 준비

(1) 호주제를 기초로 한 현행 호적제도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민법과 호적법에 기초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하나의 호적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신분자료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호적 그 자체가 아니라 호적에 기재된 가족 중 일부를 골라서 필요한 신분자료만으로 구성된 증명서를 교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호주 내지 호주와의 관계를 반드시 공개될 필요가 없게 되므로, 호주제에 관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대폭 완화할 수 있게 된다.³⁵⁾

호주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는, 과연 사회적으로 호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신분증명을 호적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생각건대, 일반적으로 볼 때에 호적과 같은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취지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부모·배우자·형제와 같은 친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굳이 호주 내지는 본적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다양한 신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 호주제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뿐만 아니라,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선을 통한 다양한 신분정

33) 이는 현재의 호적초본 중 가족 구성원별 호적초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4)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는 경우에 현재의 배우자를 검색하는 기능은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를 검색하는 기능까지 구현하려면 이를 위한 별도의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적전산화에 앞서 이미 이혼하여 제적된 배우자까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35) 즉, 신분증명에 호주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호적(家)의 구성 내지 편제 기준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양성 불평등의 문제를 외부에 표출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 제공 서비스는, 이미 위의 설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 방안과 가족별 신분등록 방안의 장점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비록 호주제에 기초하여 호적부를 편제하였다라도 외부에 제공되는 신분증명은 개인별로 또한 일정한 유형에 따른 친족범위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 신분부를 가족별로 편제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별로 편제할 것인가에 상관없이 외부에 제공될 수 있는 신분증명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와 같이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개선되고 나면, 신분정보를 편제·관리할 때에 현행과 같이 호주제로 할 것인가, 가족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산적으로 구축된 개인별 신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어떠한 그룹으로 묶어서 분류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어느 경우에도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신분증명 서비스에는 차이가 없게 된다. 호주 내지는 가족이 가지는 법률상 내지는 사회적인 의의를 떠나,³⁶⁾ 신분정보 관리라고 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위와 같은 제도를 구분하여 논의할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개선은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엔 논의되는 여러 대안 중 어느 것이 채택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준비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할 것이다.

다. 불실호적의 정리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완되면, 이중 호적자를 색출할 수 있게 되고, 호적인구와 주민등록 인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원인도 찾아내어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36) 예를 들어, 호적법상 신분정보를 가족별로 편제하는 원칙을 취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가족공동체라는 사실이 법률상 선언되고, 또한 부모는 가족구성원의 기준인으로서 법률상으로도 가족에서 구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선언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불실호적 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 장기간의 예산 지원 및 국민의 참여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보완하는 작업은 현행의 호적법에 의하더라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금년에 그 보완 작업을 시행할 예정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모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전산 호적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은 완전히 새로이 시작되어야 하며, 전체 호적인구수에 비추어 볼 때에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호적에 있는 경우에는 전산적인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호적이 다른 경우에는 일일이 종전 제적부를 찾아서 확인하여야 하며,³⁷⁾ 혹시라도 잘못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을 기할 필요도 있다.³⁸⁾

따라서,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작업의 분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상당수의 인력 확보 및 장기간에 걸친 보완·입력 작업이 필요하며,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³⁹⁾ 뿐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호적에 관한 주민등록번호의 보완·입력에 참여하고, 보완·입력된 후에도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등의 참여와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신분관계의 정확한 공시 및 사생활 보호

37) 이와 같은 상태의 호적인구가 전체 호적인구 중 4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8) 호적상 모가 "김씨"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에는 모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본적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호적만으로는 사실상 부모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39) 현재,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간과 아울러 소요 예산을 분석하고 있다.

가. 인적편제에 의한 신분등록제도는 개인별 신분자료가 사항 내지는 일차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기재됨으로써 그의 신분변동 사항을 정확히 공시한다는 데에 그 장점이 있다.

나. 그런데 현재 호적은 분가나 전적 및 입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호적을 편제하거나 호적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유효사항만을 이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기 전에 발생되었다 소멸된 사항을 알기 위하여는 과거의 제적부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호적세탁이라는 효과를 노리고 위 제도들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일부만을 이기하는 제도는 과거 종이 호적부에 의하여 호적이 편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른 종이 호적부에 옮기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불편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다. 그러나 호적부가 모두 전산화된 현재에서는 과거의 호적 전산자료를 그대로 다른 곳에 옮겨주기만 하면 되므로, 굳이 과거와 같이 유효사항만의 이기라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게 되며, 결국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신분사항을 빠짐없이 공시할 수 있게 된다.

다. 또한, 우리 나라는 서면으로 하는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받아 주고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면도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바, 본인출석주의를 취하고 나아가 직접 관공서에서 혼인식을 거행하고 있는 외국에 비하여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관계와 다른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호적에 등재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분등록제도가 나아갈 방향은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호적신고를 막고 신분등록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고 관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현행의 호적제도 아래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라. 정확하고 빠짐없는 신분등록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신분정보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신분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분등록부에 정확하고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할 것이지만,40)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까지 그 사항이 공개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신분등록은 정확하고 빈틈없이 하되, 그 공개는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된다.

과거의 호적부는 장부형태로 되어 있어 그 호적부 중 일부의 사항을 발췌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웠으므로 이를 전부 복사하거나 일부 복사하는 방식에 의하여 호적 등·초본을 발급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호적이 모두 전산화되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보완하면 호적 기재 사항 중 일부를 발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호적에 기재된 신분관련 사항 중 조금 폭넓게 공개하여도 비교적 무방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 등으로 구분하고, 호적 등·초본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그 자격 구분⁴¹⁾에 따라 공개 범위를 달리 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아울러 호적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신분사항을 유형화시켜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공개 범위가 줄어들어 호적 사항이 전부 기재된 호적등본을 발급받기 쉽지 않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거래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분정보는 공개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며,42) 신분사항이 전부 기재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본인이나 가족 등을 통하여 제공받으면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40) 예를 들어, 혼인에 앞서 배우자가 될 사람의 과거 및 현재의 혼인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공개절차는 배우자가 될 사람 스스로가 호적을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41)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부모, 자녀, 친족,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42) 예를 들어, 호적부에 기재되는 신분사항 중에서 특정신분사항에 기재된 사항 정도만 공개되어도, 현재 호적등·초본을 필요로 하는 수요의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7. 호적·신분등록의 관리

가. 현재 호적사무는 전국의 시(구)·읍·면의 장이 관장하며 그 관장기관의 수는 1,637개소에 이른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관장기관을 둔 이유는 호적부라는 종이 장부를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문제와 국민의 호적사무에 관한 불편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각 관장기관의 입장에서는 호적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호적사무의 전문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호적부는 호적관장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반면 각종의 호적신고 서류는 감독기관인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고, 호적관장기관에서 처리한 호적사무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시 감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호적사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적사무가 전문인력이 아닌 담당자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문기관에서 다시 감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전국의 호적이 전산화됨에 따라 이제는 호적사무 관할 외의 장소에서 호적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의 종이 호적부는 각 시(구)·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전산화된 호적은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에서 통합 보관되므로, 본적지 호적관서는 현실적으로 호적부가 없이 호적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며, 나아가 본적지가 아닌 호적관서에서도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호적사무 중 호적 기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수를 줄이고 그 사무를 집중하여 처리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각종 호적신고의 접수사무와 단순한 호적 등·초본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다수의 기관에서 대행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호적사무 처리기관을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호적 기재 사무 처리에 관한 지역 관할을 없앨 것인가 하는 문제는 책임 있는 호적사무의 처리, 호적신고서류의 관리 일원화, 호적사무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별지 1>

전산 호적등본 양식

본적 ①	시 구 동 번지			
②편제				
전호주와의 관계 ⑮			전 호 적 ⑪	
부 ⑦	성 별 ⑨	본 ⑩	입 적 또는 신 호 적 ⑫	
모 ⑧				
③ 호주 ⑤			출 생 ⑬ 서기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⑭	
⑥				
부 ⑦	성 별 ⑨	본 ⑩	전 호 적 ⑪	
모 ⑧			입 적 또는 신 호 적 ⑫	
④ ⑤			출 생 ⑬ 서기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⑭	
⑥				

<별지 2>

개인별 신분등록부(예)

본 인	성명	박이자, 朴二子		배 우 자	성명	주민번호	비고
	주민번호	960502-2912345 ㉑					
	생년월일	1996년 5월 2일 시 분					
	본	김포	성별		여자		
부 모	구분	성명	주민번호	자 녀	구분	성명	주민번호
	부	박일남	650501-1567123㉑				
	모	장오녀	640801-2891234㉑				
	양부						
	양모						
본인의 신분사항							
출생	【출생장소】 서울 용산구 후암동 【신고인】 박일남						
구호적	본적					호주	
	서울 용산구 후암동 23					박일남	

참고문헌

(국내)

* 단행본

1. 구본권,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5
1. 정현수, 「호적의 신분제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1999
1. 최흥기, 「한국 호적제도사연구」, 서울대 논문집 18집, 1973
1. 한국여성개발원, 「호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1. 평등사랑변호사모임·국회인권정책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1.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양성평등과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 대안」, 2000. 10. 25.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특별위원회,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999. 11.
1. 법원행정처, 「북한의 가족법」, 1998

* 논문

1. 김갑동,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의의 및 연혁」, 법조 43권 8호(통권 455호), 1994
1. 김진우, 「현행 호적공개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법조 49권 8호(통권 527호), 2000
1. 문홍안, 「호적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가족법연구 8호, 1994
1. 문홍안, 「우리나라에서의 호적제도 개편논의」, 95년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법의 과제와 현대법의 조명, 1997

1. 문홍안, 「호적제도의 현장과 과제」, 가족법연구 11호, 1997

1. 이준영, 「현대 스위스가족법의 발달과 전망」, 가족법연구 13호, 1999. 12.
1. 이희배,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제도원리의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가사조정 3호, 2000
1. 정주수, 「한국호적제도 30년의 회고와 전망 3, 4 호적제도개선 측면에서」, 사법행정 32권 1, 2호, 1991
1. 정현수, 「호적제도의 개선안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13호, 2000
1. 조대현,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법조 44권 10호, 1995
1. 조대현,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법률신문 3145호, 2003. 2.
1. 한봉희, 「1984년 스위스가족법 개정개요」, 사법행정 27권 12호, 1986

(일본)

* 단행본

1. 全國連合戶籍事務協議會, 「身分法と戶籍」, 戶籍制度八十年記念論文集, 帝國判例法規出版社, 1953
1. 全國連合戶籍事務協議會, 「日本戶籍の特質」, 戶籍制度創設百周年記念論文集, 帝國判例法規出版社, 1972
1. 利谷信義·鎌田浩 編 「戶籍と身分登録」, 早稻田大學出版部, 1996

* 논문

1. 田代有嗣, 「オランダの國籍法・親族相續法と身分登録制度 1 - 16」, 戶籍 341號 - 358號, 1974
1. 木下裕方, 「戶籍の公開制度について」, 戶籍 359號, 1975
1. 稻葉威雄, 「ヨーロッパにおける身分登録制度について」, 戶籍 364號, 1976

1. 鈴木健一, 「戸籍の公開制度に関する改正について」, 登記研究 348號, 1976
1. 大森政輔, 「戸籍制度をめぐる最近の諸問題」 戸籍 397號, 1978
1. 西堀英夫, 「最近における各國身分法の改正の動向 上, 下」, 戸籍 394, 395號, 1978
1. 田代有嗣, 「戸籍編製の原理」, 現代家族法大系(1), 1980
1. 床谷文雄, 「西ドイツの身分登録・公證制度」 民商法雑誌 93卷 3號, 1985
1. 石川利夫, 「身分登録制度としての戸籍 : 戸籍制度の比較法制的考察」, 自由と正義 37卷 5號, 1986
1. 水野紀子, 「フランスにおける親子關係の決定と民事身分の保護」, 民商法雑誌 104卷 1, 3號, 105卷 1號, 1991
1. 田代有嗣, 「戸籍制度のあり方」, 現代家族法(1), 第1卷, 1991
1. 水野紀子, 「戸籍制度」, ジュリスト 特集 1000號, 新世紀の日本法, 1992
1. 伊藤昌司, 「フランス親子法における身分占有」, 家族法, 1992
1. 二宮周平, 「これからの家族法と戸籍制度」, 法律時報 65卷 12號, 1993
1. 利谷信義, 「戸籍制度の役割と問題點」, ジュリスト 1059號, 1994
1. 島野穹子, 「戸籍制度の現状と將來」, 自由と正義 37卷 5號, 1996
1. 松倉耕作, 「スイス家族法・相續法」, 1996
1. 陳宇澄, 「中國の家族法と戸籍制度」, 私法 59號, 1997
1. 井戸田博史, 「戸籍制度とプライバシー」, 家族の法と歴史, 2000
1. 田代有嗣, 「戸籍とは何か. なぜ諸外國には戸籍が無いのか」, 戸籍 731號, 2002

(기타)

* 단행본

○ 영어

1. 2001 Taipei Household Administration's Day - Asia Summit, 「Japan, Kore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1. Homer Clark, 「The law of domestic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68
1.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Netherlands), 「GBA」, 「First registration in the Dutch - population register」

○ 프랑스어

1. Alain Benabent, 「La Famille」, Litec, 1994
1. François Terre, 「les personnes, la famille, les incapacites」, Dalloz, 1996
1. Jean Hauser, 「Traite de droit civil : la famille : fondation et vie de la famille」, L.G.D.J, 1993
1. Philippe Malaurie, 「Cours de droit civil : la famille」, Cujas, 1992

* 논문

○ 독일어

1. Klaus Schwaighofer, 「Das Angehörigenverhältnis durch gemeinsame Elternschaft Kindpersonenstandsrechtlich oder」, o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Jahrg. 56, 2001. 9.
1. Werner Hoppe, 「Einsichtsrecht der Erbenermittler in Personenstandsbüch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 107, 1999

○ 프랑스어

1. Isabelle Ardeeff, 「L'état civil est-il un casier civil?」, Recueil Le Dalloz, 2001

판 권
소 유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 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2003년 5월 13일 인쇄

2003년 5월 16일 발행

발행 법 원 행 정 처

인쇄 성 문 인 쇄 사

비매품